

의안번호	2209848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4.6.30.
추 계 번호	25B2311

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 (재정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7조 (부담금 등의 감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• 미대상: 선언적 규정
2	안 제6조(재정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7조(부담금 등의 감면)	

2. 상세사유

- (안 제6조)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, 이후 기본계획,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과정에서 연도별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, 제정안은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, 연도별 지원금액 및 재원분담 구조 등이 현시점에 불확정적인 상황으로,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위례신사선 사업개요는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- (안 제7조)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, 현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있어 향후 각 사업구간, 면적, 시설규모 등이 확정되어야 부담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대상 및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, 부담금 등의 산정을 위해 해당 토지의 면적, 지역별 공시지가, 용도지역, 생태등급, 사업기간 등 대상별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 이와 같은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, 현시점에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
[표 1] 주요 부담금별 부과 산식

부담금명	산출식
농지보전부담금	전용하는 농지의 면적(㎡) ×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(농업진흥지역밖) 또는 100분의 30(농업진흥지역안) * 상한금액 : 5만원/㎡
대체초지조성비	(초지조성단가 + 3년간 초지관리비) × 전용면적
대체산림자원조성비	산지전용 ·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× (단위면적당 금액 +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일부 반영비율)
하천점용료·사용료	면적(㎡) × 용도별 단가(원/㎡) × 사용기간(연 단위)
교통유발부담금	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생태계보전부담금	훼손면적 ×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× 지역계수
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	점용면적 또는 수량 × 용도별 단가(원/㎡ 또는 원/㎥) × 기간
기반시설설치비용	연면적 또는 면적 기준 × 설치비용 단가 ※ 도로나 공원, 상·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단가 + 사업지 특성에 따른 조정계수 적용

자료: 기획재정부(2025). 「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」 및 법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

서울특별시 제출자료

□ 사업개요

- 구 간 : 위례신도시~신사역(3호선)
- 규 모 : 연장 14.8km, 정거장 11개소, 차량기지 1개소



- (사전타당성조사) 총사업비 : 1조 9,313억원(국비 6,485억 원 / 시비 9,728억 원 / 분담금 3,100억 원)
- 추진주체 : (주관부처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, (지자체) 서울특별시

□ 추진경위

- '08. 3 :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(국토부, 송파~강북도심간)
- '14. 5 :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(국토부, 위례~신사)
- '15. 6 : 서울시 제1차 도시철도망계획(변경) 신규반영 (위례~신사)
- '17. 1 : 민자 사업제안서 접수
- '18. 11 :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(B/C 1.02, KDI PIMAC)
- '19. 7 : 제3자 제안공고 및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
- '20. 1 :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'24. 6 :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
- '24. 8 : 제3자 제안 재공고 (2회, 1차 - 8.16 / 2차 - 10.4)

- '24. 11 : 재공고 최종 유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전환 발표
- '24. 12 :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 및 사전타당성조사 착수
- '25. 4 :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(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예비타당성조사 수행

